

의안번호	제501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11월 2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501
----------	-----

제출연월일 : 2016년 11월 2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주민과 지역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의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
- '다양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설립*으로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민선 6기 공약(217) :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안제1조~안제3조)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안제7조, 안제8조)
- 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안제9조, 안제10조)
- 다양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안제25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도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한 활동
 - 나. 지역주민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가는 활동
 - 다.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활동
 - 라.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한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7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종합발전계획
3. 다양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활성화 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그 밖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3. 그 밖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충청북도 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및 시·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지역 환경 보전 및 개선
3.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
4.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
5.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6.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연구 조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지원 신청 등)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평가·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사업의 분석·평가
5.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2.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3. 주민대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자문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 부서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다양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5.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제정사유

-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성장으로 인해 파괴된 마을공동체의 복원 및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의 행복 구현 및 지속발전동력 창출·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7조(관리 및 운영)의 근거로 필요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27조(관리 및 운영) ④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센터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사무실 구축비,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 추계의 전제
 - 센터(사무실) 구축, 인건비, 센터운영(일반수용비, 회의운영수당,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등) 경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 추계결과 : '16~20년까지 총 13.5억 원 정도 소요
-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출	-	-	650,000	350,000	350,000	1,350,000
센터 구축 시설비	-	-	300,000			300,000
인건비 및 운영비	-	-	150,000	150,000	150,000	450,000
사업비	-	-	200,000	200,000	200,000	600,000

6.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문석구